오산세교2
금강펜테리움 오산역
센트럴파크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A8블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청약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이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Ⅰ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거주의무	거주의무	과밀억제권역
민영주택	오산시 지정일 제4, 5지구 (2022.04.25. 이전에는 제4, 5지)	3년(오산, 화성, 평택, 안성, 용인시 처인구 제외)		해당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적용	공공주도(오산역세권개발)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일
일정	2024.04.26.(금)	2024.05.07.(화)	2024.05.08.(수)	2024.05.09.(목)	2024.05.16.(목)	2024.05.17.(금) ~ 2024.05.20.(월)	2024.05.27.(월) ~ 2024.05.30.(목)

■ 견본주택 운영정보 안내
- 위치: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강펜테리움 오산역센터 견본주택 부동산중개오피스텔 1층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1129-1)
-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관)
- 주차장: 견본주택 방문 차량은 무료이용 가능하나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오산세교2 금강 펜테리움(센트럴파크)" 견본주택 개관 안내
- 개관일: 2024년 3월 16일(토) 예정 (※ 개관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관시간: 평일, 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관)
- 위치: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강펜테리움 오산역센터 견본주택 부동산중개오피스텔 1층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1129-1)
- 주차장: 견본주택 방문 차량은 무료이용 가능하나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Ⅱ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예정일로부터 3년 6개월 이내에 거주의무자로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5.29. 시행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공급 승인신청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단지는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 중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청약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후 전매제한 기간 중 해당 주택 및 분양권 등의 매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지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7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8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9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0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1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2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3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3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145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